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14

발의연월일: 2024. 7. 5.

발 의 자:김병기·한준호·박 정

한병도 • 문진석 • 김성환

이기헌 • 박상혁 • 장경태

서영교 · 윤종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자(이하 "고령운전자"라 한다)가 11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. 특히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3만 1,0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720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.

그런데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,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, 고령운전자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걸리는 만큼 고령운전자의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운행 안전장치가장착된 자동차의 구매를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4(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장치 장착 자동차 구매 지원) ① 국가등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,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5조의4(고령운전자의 운행 안
	전장치 장착 자동차 구매 지
	원) ① 국가등은 65세 이상의
	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
	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
	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
	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
	지원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
	안전장치의 종류, 지급기준, 지
	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
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